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598호

제출년월일 : ２０２１년 4월 2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정하고, 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7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각 재난별 편성기준과 업무 등을 정함.(안 제8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라. 재난 발생 또는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무자의 복무와 사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사.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의 지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본부장은 관계 기관과의 홍보 연락망 개설과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기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34조의5,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60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산 : 21,530천원 편성

(통합지원본부 운영 함께 포함)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11. ~ 2021. 3.31.)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외에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 부구청장
2. 총괄조정관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다만, 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3. 지원협력관 :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 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수습 총괄
3. 지원협력관 : 재난 관련 행정지원 업무 총괄
4. 담당관 : 총괄조정관 보좌, 재난 유형에 따른 해당 재난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지원협력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2에 따른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 별표 3
   나. 사회재난 발생 시 : 별표 4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의 수습과 관련된 국·소장 및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

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및 지원협력관, 담당관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참석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의 장
   나. 그 밖에 관계 기관의 공무원 중 재난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동원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소유자 또는 지정·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45조제1항 “대책본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책본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로 본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유 형 별	소 관 부 서
주요 재난	풍수해	치수과
	제설	도로과
	지진·지진해일	안전재난과
	폭염, 한파	안전재난과
	초미세먼지	녹색환경과
	유독물, 수질오염	녹색환경과
	산사태, 절개지 붕괴 등	공원녹지과
	산불	공원녹지과
	감염병	보건행정과
	가축전염병	보건위생과
	방사능 방재	안전재난과
이재민	이재민구호	복지정책과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의약과
언론대응	언론대응	홍보과
공공청사	공공청사 방호대책	총무과
환경청소	환경	청소행정과
에너지	전력, 열수송, 에너지분야	녹색환경과
	가스, 유류	녹색환경과
통신망	통신망 대책	스마트정보과
전산망	전산망 대책	스마트정보과
사이버	사이버안전	스마트정보과
교통수송	교통수송 (버스, 화물, 택시)	교통행정과

구 분	유 형 별	소 관 부 서
시설물 사고 (화재, 붕괴)	도로시설물	도로과
	하수시설물	치수과
	자전거도로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행정과
	공원시설물	공원녹지과
건축물 사고 (화재, 붕괴)	복합, 일반 건축물	건축과
	공동주택(아파트)	주택과
	시장 및 대규모점포	일자리경제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주택단지	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출산보육과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
사회복지 등 사고	사회종합복지관	복지정책과
	양천해누리복지관	자립지원과
	어르신복지관	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 시설, 문화재 사고	유원시설안전	문화체육과
	공연(행사)장 안전	문화체육과
	공공 체육시설안전	문화체육과
	문화재	문화체육과
공공도서관		교육지원과

[별표 2]

재난 상황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태풍·호우·홍수)	1) 비상 1단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양천구에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태풍경보가 양천구에 발표된 경우 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홍수에 관한 특보(이하 "홍수특보"라 한다) 중 홍수주의보가 양천구에 발표되었거나 한강대교 수위가 8.5m 이상 된 경우 다) 풍수해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양천구에 3일 이상 호우 전망이 있는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홍수특보 중 홍수경보가 양천구에 발표되었거나 한강대교 수위가 10.5m 이상 된 경우 라) 풍수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마) 풍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다수 발생한 경우
	나. 대설	1) 비상 1단계	기상특보 중 강설예보가 적설량 5cm 미만 예보시
		2) 비상 2단계	기상특보 중 강설예보가 적설량 5cm 이상 예보시
		3) 비상 3단계	기상특보 중 강설예보가 적설량 10cm 이상 예보시
	다. 지진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구분			비상단계 기준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5등급 이상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 ※ 진도등급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른 구분 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등급 이상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산재경보(이하 "화산재경보"라 한다)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단계	가) 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진도 6등급 이상의 현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라. 폭염·한파	1) 비상 1단계	기상특보 중 폭염·한파주의보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발령한 경우
		2) 비상 2단계	기상특보 중 폭염·한파경보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발령한 경우
		3) 비상 3단계	기상특보 중 폭염·한파경보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발령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구분	비상단계 기준
비고 1.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자연재난에 따른 양천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대책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지원협력관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담 당 관		해당 자연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6+α명**	**13+α+β명**	**18+α+β명**
	반 장	각 실무반별 관련부서의 장 1명		
	1) 상황총괄반	· 해당 자연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구성 - 상황관리팀 -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분석 평가팀 - 행정지원팀		
	2) 생활지원반 (α)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등		
	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α)	· 관련부서 :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4) 통신지원반 (α)	·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등		
	5) 시설복구반 (α)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등		
	6). 에너지복구반 (α)	· 관련부서 : 녹색환경과 등		
	7) 재난홍보반 (α)	· 관련부서 : 홍보과 등		
	8) 자원지원반 (α)	· 관련부서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등		
	9) 교통대책반 (α)	· 관련부서 :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10) 행정지원·	· 관련부서 : 총무과, 주민협치과 등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자원봉사반 (α)			
	11) 의료방역반 (α)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12) 질서협력반 (α)	·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안전재난과 등		
	13) 구조구급반 (α)	· 관련부서 :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약과 등		
	14)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β)	· 강서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7688부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도시가스(서부지사), 귀뚜라미에너지(도시가스), 한국전력강서양천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한적십자사(서부봉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총괄반은 해당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그 외 실무반은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담당 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반의 명칭 및 담당 부서와 근무인원 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재난에 따른 양천구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대책본부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지원협력관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담 당 관		해당 사회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 원	총 19+α명
	반 장	각 실무반별 관련부서의 장 1명
	1) 상황총괄반	· 사회재난총괄부서 및 해당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 - 상황관리 총괄팀 - 수습상황 파악팀 - 현장지원팀
	2) 생활지원반 (α)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 지역보건과 등
	3)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α)	· 관련부서 :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등
	4) 통신지원반 (α)	· 관련부서 : 스마트정보과 등
	5) 시설복구반 (α)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등
	6). 에너지복구반 (α)	· 관련부서 : 녹색환경과 등
	7) 재난홍보반 (α)	· 관련부서 : 홍보과 등
	8) 자원지원반 (α)	· 관련부서 :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안전재난과 등
	9) 교통대책반 (α)	· 관련부서 :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10)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α)	· 관련부서 : 총무과, 주민협치과 등
	11) 의료방역반 (α)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등
	12) 질서협력반 (α)	·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협치과, 교육지원과, 안전재난과 등
	13) 구조구급반 (α)	· 관련부서 : 총무과, 안전재난과, 의약과장
	14)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강서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7688부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도시가스(서부지사), 귀뚜라미에너지(도시가스), 한국전력강서양천지점, 한국전기안전공사(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 대한적십자사(서부봉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 총괄반	1) 상황 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계 기관 등 전파 마) 대책본부장 주재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 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대책본부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a)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b)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c) 지진·화산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d) 폭염·한파 :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 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 동향, 미담 사례 등 확인
	3) 상황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구 분		업무와 역할
	분석 평가팀	나) 재난현장 파악 등을 위해 직원 파견 및 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 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 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나. 생활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다.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4) 각 부서 및 관할지역 복구현황 파악
라. 통신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구 분	업무와 역할
	4) 각 부서 및 관할지역 복구현황 파악
마. 시설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각 부서 및 관할지역 응급복구 현황 파악
바. 에너지복구반	1)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4) 각 부서 및 관할지역 복구현황 파악
사. 재난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 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 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아. 자원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 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자.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교통(육상, 항공 등) 통제현황 파악 및 통제실시 2) 교통(육상, 항공 등)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4) 긴급수송 지원

구 분	업무와 역할
	6)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차.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카. 의료방역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및 지도·확인 5)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타. 질서협력반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4) 군부대, 민방위 지원 대책 5) 경찰력, 타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 등
파. 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하.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업무와 역할</th></tr>
<tr><td rowspan="3">가. 상황
총괄반</td><td>1) 상황관리 총괄팀</td><td>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 관리 총괄
다)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td></tr>
<tr><td>2) 수습상황 파악팀</td><td>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 피해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지역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재난현장 파악 등을 위한 직원 파견 및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td></tr>
<tr><td>3) 현장지원팀</td><td>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td></tr>
<tr><td colspan="2">나. 생활지원반</td><td rowspan="13">자연재난 실무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td></tr>
<tr><td colspan="2">다. 환경정비반</td></tr>
<tr><td colspan="2">라. 통신지원반</td></tr>
<tr><td colspan="2">마. 응급복구반</td></tr>
<tr><td colspan="2">바. 에너지지원반</td></tr>
<tr><td colspan="2">사. 자원지원반</td></tr>
<tr><td colspan="2">아. 교통대책반</td></tr>
<tr><td colspan="2">자. 의료지원반</td></tr>
<tr><td colspan="2">차. 구조구급지원반</td></tr>
<tr><td colspan="2">카. 자원봉사지원반</td></tr>
<tr><td colspan="2">타. 질서유지반</td></tr>
<tr><td colspan="2">파. 재난홍보반</td></tr>
<tr><td colspan="2">하.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td><td>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3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td></tr>
</table>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 12. (생 략)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 ④ (생 략)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

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 ⑩ (생 략)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